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143호 2016. 01. 12.(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 청라지역 봉투 제작시 자동집하시설 인식 스티커 추가 부착 (안 제1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지원방법 개정 (안 제15조)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청결유지 조치 관련 사항 개정 (안 제9조2제2항)
-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8조부터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으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별지 제3,4,7,8호 서식)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552) 또는 Fax(560-276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 자료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10조”를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익일06:00”를 “24:00”로,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50ℓ:13kg이하, 100ℓ:25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 한다.

제7조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호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을 “따른조치

명령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9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16조 삼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서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중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를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은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0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10	33×56.5 36×53.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45×65.3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100	71×113.5	일반용봉투(가연성) 공공용봉투
125	80×120	가정사업계용봉투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 ~ 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폐냉장고,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재활용품은 화요일 20:00 ~ 24:00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 ~ 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1.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폐각류, 폐전구, 깨진그릇 등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 (20:00 ~ 24:00)에 배출하십시오.
4. 폐냉장고,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재활용품은 화요일 20:00 ~ 24:00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 ~ 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 가정사업계용 -

1. 이 봉투는 ○ ○ ○ 또는 ○ ○ ○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 (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양탄자, 보온재, 폐목재, 오폐수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일체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 ~ 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봉투() -

1.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쓰레기용)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391 ~ 5)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쓰레기봉투()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560-4391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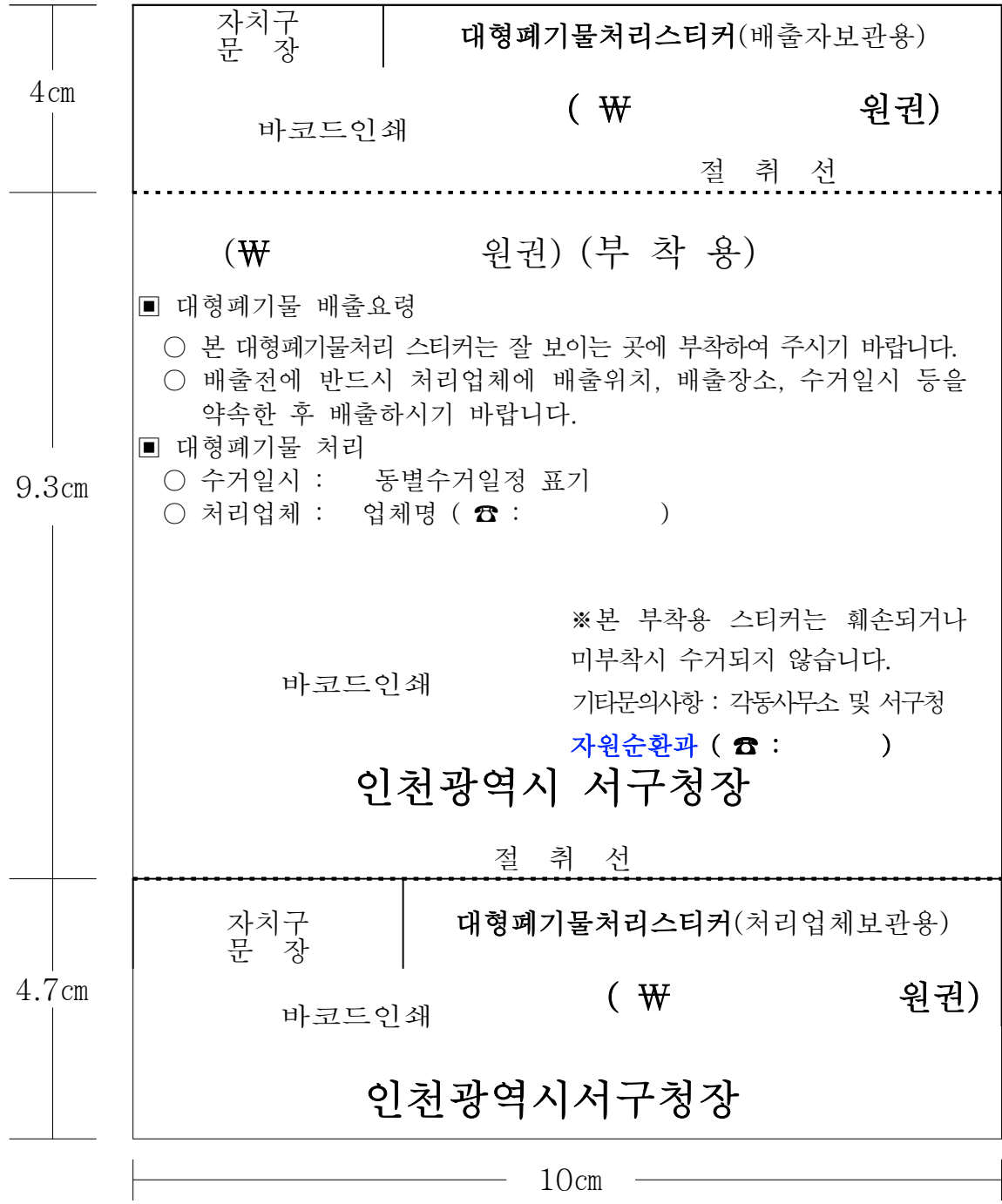
서구시설관리공단(☎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 5]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1조 관련)



※ 종류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4종으로 1,000원권은 파랑색 바탕에 흰글씨, 3,000원권은 초록색 바탕에 흰글씨, 5,000원권은 주황색 바탕에 흰글씨, 10,000원권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을)							(피처분자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 니 지정된 기한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								
인천 광역 시 서 구 청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월일까지		납부장소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부인		인천 광역 시 서 구 청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 행 번 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계 좌 번 호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년 월 일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34g/m²)

(무)						(인천광역시서구청통보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계 좌 번 호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년 월 일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 하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34g/m²)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①성 명		②생년월일	
에대한이의	③주 소			
제 기 자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처 분내 역	⑥부과기간		⑦이 의 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6. (생략)

7.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은 제외한다.

②이 조는 법 제17조 및 시행

 ----- 따른 -----

5.·6. (현행과 같음)

7. -----

 ----- 따른 -----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제15조에 따른 -----

②-----

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③ (생략)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6조-----

-----.

②----- 둘 이상-----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따른 -----

-----.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00부터 익일06: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 6.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로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24:00-----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50ℓ:13kg이하, 100ℓ:25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2. ~ 6. (현행과 같음)

② -----
-----다른-----

-----.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 다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

 -----1개월-----

 -----1개월-----
 -----.

②----- 따른 조치명령은 -----
 -----.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삭 제>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 ④ (생략)

⑤구청장은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 ③ (생략)

④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

-----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따
른-----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급자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생략)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1. (현행 제3호와 같음)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

----- 또한, 서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제18조(의견제출) ①과태료 처분

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삭 제><삭 제>

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독촉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삭 제>

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삭 제>

<삭 제>

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
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삭 제>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삭 제>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삭 제>

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2015.8.05.)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5. 8. 5.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2015.8.)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2015. 8.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사 무 국